「직업소개소 이용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화」행정명령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경상남도 일원에 「직업소개소 이용 노동자 진단검사 (PCR) 의무화」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.



- 1. 처분당사자 : 경상남도 내 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
- 2. 처분기간 : 2021.10.07.(목) 00:00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
 - * 검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2021. 10.10(일) 00:00부터 처분적용
- 3. 처분내용
 - ① 직업소개사업자는 노동자(내·외국인 및 일용직노동자 포함)를 <u>신규 등록후</u> 소개하는 경우 등록 전 3일(72시간)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.
 - ② 직업소개사업자는 <u>기존에 등록된 노동자</u>의 경우에도 <u>소개 전 7일</u> 이내 발급한 <u>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</u>하여야 함.
 - 단,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*는 진단검사 제외
 - *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,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
 - ② 1회 접종만으로 완료되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및 예방접종 완료 입증이 가능한 자

- 4. 처분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의2, 2호의4, 제3항 및 제83조의 제2항
- 5. 처분사유 : 도내 코로나19 유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직업소개소 이용 노동자의 진단검사(PCR) 조치 필요
- 6. 처분서 교부요청 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7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8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·조사·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- 9. 문의처 :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과(055-211-3314)